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 21 선고 2018가합130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도

담당변호사 신현일

변론 종결 2020. 12. 3.

판결 선고 2021. 1. 2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233,821원 및 그중 377,979,615원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19. 1. 4.까지는 연 10%의, 2019. 1.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337,577,206원 및 그중 34,047,200원에 대하여 2018. 10. 4.부터, 14,337,595원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147,488,702원에 대하여 2018. 8. 13.부터, 22,311,165원에 대하여 2018. 8. 8.부터, 167,200원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13,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27,302,000원에 대하여 2018. 10. 4.부터, 42,783,840원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16,139,504원에 대하여 2018. 8. 7.부터 각 2021. 1. 21.까지는 연 6%의, 2021. 1. 22.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2018. 7. 9.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에 2018. 7. 9. 접수 제008824호로 마친 소유권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A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C이 부담한다.

6.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233,821원 및 그중 377,979,615원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340,239,306원 및 그중

34,047,200원에 대하여 2018. 10. 4.부터, 14,337,595원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169,799,867원에 대하여 2018. 8. 8.부터, 167,200원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13,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70,085,840원에 대하여 2018. 10. 4.부터, 16,139,504원에 대하여 2018. 8. 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 제3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5.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있어 신용보증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원금 382,500,000원, 보증기한 2018. 5. 15.(이후 2019. 5. 15.로 연장됨)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은 이후 2018. 7. 11. 피고 A의 당좌거래 부도라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11. 20. D은행에 377,979,615원(원금 373,958,164원, 이자 4,021,45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18. 11. 30. 현재 원고가 위 대위변제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회수하지 못한 잔액은 254,206원이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A은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별지 매출채권보험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자별로 거래상대방이 피고 A인 매출채권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매출채권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피고 A에 대해 취득한 매출채권을 이행 받지 못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를 원고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 각 보험계약자가 피고 A에 대하여 물품 공급 등으로 인한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A이 당좌거래 부도 등의 사유로 위 각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는 별지 매출채권보험표 기재와 같이 위 각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합계 337,577,206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C은 2018. 7. 9.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이던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접수 제008824호로 소유권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 11 내지 18, 20, 21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및 채권보전비용 잔액 합계 378,233,821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377,979,61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1.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2019. 1. 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매출채권보험계약에 따른 대위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원고에게 337,577,206원 및 그중 34,047,200원에 대하여 2018. 10. 4.부터, 14,337,595원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147,488,702원에 대하여 2018. 8. 13.부터(2018. 8. 8.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2,311,165원에 대하여 2018. 8. 8.부터, 167,200원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13,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27,302,000원에 대하여 2018. 10. 4.부터, 42,783,840원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2018. 10. 4.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6,139,504원에 대하여 2018. 8. 7.부터 각 피고 A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2021.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위 각 매출채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피고 A의 도급인으로부터 채권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채권보전비용 2,662,100원의 지급도 구하지만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A이 원고에게 채권보전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채권과 매출채권보험계약에 따른 대위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위 각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갑 제10호증의 24의 기재, 이 법원의 여수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무렵 피고 A의 적극재산 가액은 3,979,148,100원이고 소극재산 가액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합계만도 7,708,162,883원인 사실,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 피고 A의 적극재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액 합계가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도 715,811,027원(= 378,233,821원 + 337,577,206원)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A이 보유한 9,374,724,999원의 채권을 적극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A이 9,374,724,999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과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무자인 피고 A의 총재산 감소를 초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그 채권을 변제받는 수단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피고 A으로부터 대물변제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정업

판사김동욱

판사김은솔

별지